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 2018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 이종숙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18. 11. 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숙 의원)

가. 제안이유

○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고, 부칙에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출 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안 제10조)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생활보장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31. ~ 11. 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동영)

가. 개정 취지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정법 시행 관련 적용례에 따라 우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0조를 신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종합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비의 지출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종전 지방재정법¹⁾은 존속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 부칙에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현행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

1)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까지가 존속기한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치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²⁾).

- 이에 상위법령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 등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2) 한편, 개정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으나, 최근 동 단서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시·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근거하는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접수(2018.10.23)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